#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177 발의연월일: 2021년 1월 25일

발 의 자 : 정병용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, 월정수당 까지 지급 제한을 확대함으로써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일체의 금원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

#### 2. 주요내용

○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# 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1월 25일 ~ 2월 1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본문 중 "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"를 "월정수당,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월정수당,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